

■ 법률 칼럼

영주권 신청 중의 고용주 변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도중에 스폰서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해서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abor Certification (L/C)과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I-485를 접수한 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긴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우선 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AC 21이라는 법에 의해 신청자는 전 고용주를 통해 이미 접수되어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직장의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L/C상의 업무와 비슷하다면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I-140과 I-485가 동시 접수되고 I-140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승인이 가능한 I-140이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AC 21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인될 가능성이 없는 I-140을 I-485와 동시 접수한 경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180일이 지난다 해도 AC21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해 가능하다



면 I-140과 I-485가 동시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났다 해도 I-140이 승인된 이후 이직 하는 것이 좋습니다.

AC21에 의해 영주권 진행 중 직장을 변경한 경우 전 직장보다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승인된 L/C에 기입된 prevailing wage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직장으로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의 연봉이 그 전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이민국에서 두 일자리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일을 한 후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직장을 옮기면 처음부터 고용/취업 의사가 없었다는 오해를 받아 시민권 신청이나 다른 이민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권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장례 칼럼

한 점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웃어른들의 묘에 예를 올리러 가면 무덤 앞 양가에 어린아이 키만한 비석이 서 있었다. 그 옆에서 사진을 찍곤 하였다.

그 비석에는 많은 한자가 뿔뿔이 새겨져 있었다. 원래 비석(碑石)이란 돌기둥 비 혹은 비석 비자와 돌 석자의 합성어로서 직립의 돌기둥에 공적이나 기념할 내용을 새겨 세워놓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비석이라는 칭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 후 땅자의 머리 부분에 일정한 사이즈로 이틀과 출생일, 사망일을 새겨 두는 돌판이다. 영어로는 주로 Head Stone or Marker, 머릿돌 혹은 표지돌로 표현된다. 누워 있는 땅자의 삶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전 한국에서처럼 내 땅이나 종가의 선산이 있다면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공원 묘지의 땅을 빌려 매장을 하기에 그들의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땅에 깔려 있는 수많은 돌판의 비석은 거의 모양이 비슷하다. 이름 석자와 출생과 사망의 날짜. 그리고 두 숫자 사이에 한 점.

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놓여 있는 비석을 찬찬히 보면 이 땅에 오래 계셨던 분도 있고 안타까울 만큼 일찍 떠난 사람도 많다. 자연적으로 나의 발길은 천천히 걷게 된다. 온갖 이름들이 다 있다. 어느 민족인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혹은 무엇을 하다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른다.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피동적으로 미국, 이 땅에 매장되었을 뿐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성경 시편 90 편에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다. 그렇다 신속

히 가니 우리가 사는 이 평생이 두 숫자 사이의 한 점일 뿐이다.

한 점

오늘의 웃음과 기쁨도 행복으로 용해되어

한 점으로 남으리라.

끝없는 허공과 환구름, 명치와 벚삼은 그라운드 보고품도 한 점 뒤에 숨어 남으리라.

쌓이는 불안과 실망, 눈물 그리고 끼치는 한숨도

슬픔으로 녹아져 한 점으로 남으리라.

시퍼런 자존심이 참을 수 없어 날뛰는 분노도

시간 속에 식어져 한 점으로 남으리라.

금색 명함 뒷면, 갑질스레 열거한 직함과 경력들도

퇴색하여 한 점으로 남으리라.

인생의 여정에 걸었던 시간도 짧았던 시간도

모두 멍쳐져 한 점으로 남으리라.

무지개 색깔로 그려진 내 인생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이름 석자 아래 출생일과 사망일 사이 한 점으로 남으리라.

빨주노초과남보가 한 점으로 모이면

그때 나는 무색이 되어

투명한 영혼에 날개를 달고

영원으로

월 ~

월 ~

이효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를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도 즐겨보세요!!

생활, 법률, 건강 등의 다양한 칼럼, 여행, 요리, 부동산, 사진, 영화, 사고팔고, 구인구직 매매임대 등의 다양한 생활정보와 한인사회 소식, 지면보기(pdf신문보기)까지

〈타운뉴스 QR코드〉



townnewsusa.com

타운뉴스 홈페이지 접속 방법

1. 스마트폰 카메라로 왼쪽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타운뉴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주소창에 왼쪽의 타운뉴스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문
쉽고, 빠르게 타운뉴스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온라인 홈페이지: townnewsusa.com